

■■■■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성능검정 기자재 중 방폭성능 인증품에 대한 인증마크(제품표면) 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의2에 의한 합격표시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2.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3.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방폭성능 형식인증을 받았으나, 위의 표시방법으로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검사처리 방법은?
4. 만약, 합격표시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된다면, 이를 위반한 형식승인 업체에 대한 제재 방법은?

[접수번호 : 714]

내용을 검토한바 인증마크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합격표시는 법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4항)의 취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이행시 이에 대한 처벌조항 등 강행규정은 없으며, 표시를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항(별표9-2)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합격표시의 다른 방법은 제품별로 합격인증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위 표시방법으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합격품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통하여 입증토록 하고 위 별표에 의한 표시를 부착토록 행정지도
- 미검정품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33조1항)으로 처벌가능하나 검정후 합격제품에 대한 표시 미부착(33조4항)부분은 강행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부착토록 행정지도요한.

■■■■ Question 저희는 설계를 한 후 현장감리를 위해 하루 평균 2~3회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 활동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1년마다 정기 건강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설계작업의 특성상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반복 타이핑, 반복 마우스클릭 등 근골격계 질환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직종이며, 업무특성상 잔업이 잦고 설계공정준수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심한편입니다. 현재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주)○○조선 해양의 설계직 직원들도 1년에 한번씩 건강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1년마다 정기 건강진단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75]

귀하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2항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

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는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자면 해당 업무 근로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2006년부터 채용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9조 제 1항의 “의무적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동시행규칙 99조 1항의 삭제로 통하여 폐지되었습니다. 그 뜻이 기업이 채용시 건강검진을 할 수 없다는, 즉 금지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채용시 신체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425]


귀하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1.1.부로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당 현장은 토목공사비 250억원 공사기간 5년이며 상시일용근로자가 10~20인 미만입니다.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15288]

귀하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 현장의 경우 상위 내용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